

거창군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 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 제출일 : 2004. 1. 7.

○ 제출자 :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04. 1. 9.

다. 의안번호 : 제 2004 - 7호

2.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가. 제정이유

○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1회용품 사용 규제시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 마련 (안 제2조)

-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 “별표1”과 같음

○ 위반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안 제7조)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별표1”과 같음

○ 위반사항 신고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신고 하여야 함(안 제10조)

-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규정(안 제11조)
 - 피신고 사업장이 위반당일 점검공무원 등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 기타 포상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검토의견

- 제9조 (신고방법 등) -----51P
 -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 군수에게 증거자료(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나, 신고자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1회용품 사용규제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가 구두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고 시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별표1 ----- 53P
 -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산정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조례안의 형식이나 체제 및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참 고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 및 환경범죄의단속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
- 환경오염등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지침(환경부 67421 - 12호)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2003. 10)